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7가합26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박제현, 이보라

피고1.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운

담당변호사 김택순, 김창형, 김기수

2.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변론 종결2020. 10. 14.

판결 선고2020. 11. 1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원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경기도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각 원고별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G은 망 H(H, 19441) . 12. 29. 사망)의 장남이다. 망 I이 1958. 9. 24. 사망하여 그의 둘째아들인 망 J2) 이 망 I을 호주상속하였다. 원고 A, C, D, E, F는 망 J의 자녀들이며, 원고 B은 망 J의 처(妻)이다.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각 상속지분대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대장상 기재

1) 수원군 K리(이하 'K리'라고 한다) L 임야 5정 4단보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때 멸실되었다가 1967. 4. 1.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구 임야대장[부책식 임야대장(갑 제5호증 제3쪽), 이하 '구 임야대장'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임야는 1967. 4. 1.자 분할(본번에 'M'를 부함)과 1968. 2. 22.자 분할(본번에 'N'과 'O'를 부함)로 인하여 그 면적이 3정 6단보로 되었다. 위 L 임야 3정 6단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이후 35,702m²3) 로 면적 환산등록되었다.

2)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연·월·일의 기재가 없이 'P에 주소지를 둔 Q'이 최초로 기재되었다가, 연·월·일의 기재가 없이 '사정(査定)'을 사고(事故)로 하여 소유자가 '국(國)'으로 바뀐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연·월·일의 기재가 없이 소유자가 'R에 주소를 둔 S'으로 바뀐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4) , 이에 이어 1968. 2. 14. '소유권이전'을 사고로 하여 소유자가 'T 외 3인'으로 바뀐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기재

- 1) 1968. 2. 14. 분할 전 토지 중 3/8, 2/8, 1/8, 2/8 지분에 관하여 T, U, V, W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8.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 앞으로, 1984.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Y 앞으로, 1984.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Z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 분할 전 토지는 2013. 5. 30. L 임야 32,460m²와 AA 3,242m²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개별로 칭할 경우 'L 토지', 'AA 토지'라고 하고,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5. 3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L 토지에 관하여는 2014. 6. 26.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AA 토지에 관하여는 2013. 6. 2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청 토지정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사정받은 것이 밝혀졌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들은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구 임야대장에 망 J의 조부인 망 H이 분할 전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 H은 1943년경까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임야세도 납부하였으므로, 망 H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경위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소유자가 있는 토지에 이루어진 이 같은 사정은 당연무효이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 장남이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다. 망 H이 민법 제정 전 사망하여 그 소유의 분할 전 토지를 망 G이 상속하였고, 망 G의 재산을 망 J이 상속하였으며,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들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최종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Q'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Q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고, 구 임야대장에 기재된 위 Q과 원고들의 선대인 H이 동일인임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 경기도의 주장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Q'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Q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사정이 당연무효라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초 소유자가 망 Q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경기도가 Z와 AB의 점유를 승계하여 1984. 12. 21.부터 20년간 AA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경기도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 50044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2)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총령 제38호, 폐지) 제1조,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상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주소,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구 산림법(유희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이라면 위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임야의 사정 당시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가 이와 다른 내용의 연고관계를 가지는 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가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79조에 의하면, 임야조사서의 기재방법에 있어 위 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유로 사정하여야 할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주소는 이를 소유자의 씨명, 주소란에 기재하고,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첨 제9호 양식(임야조사서 용지)의 비고란의 기재방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임야조사서상에 소유자는 "국", 연고자는 특정 개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 비고란에도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재방법을 위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연유가 따로 밝혀지지 않는 한, 해당 임야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적의 계출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나아가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등 참조).

3)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485 판결 등 참조).

4)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관계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은 없으나(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60991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그 기재내용을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6718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7, 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K리 일대에 관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AC 임야 12정 2단 8무보와 AD 임야 6정 1단 7무보에 관하여, 각 '국유사유구별'란에 '국(國)', '처분건입'란에 '유대(有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의 '주소'란에 'AE리', '성명'란에 'AF'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②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K리 일대에 관한 임야세명기장에 의하면, 소화 8년(서기 1933년)경부터 소화 15년(서기 1940년)경까지, M 임야 6정 1단 6무보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AG에 주소를 둔 'AH'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I 임야 5정 7단 5무보, AJ 임야 3단 4무보, AK 임야 8무보에 관한 각 납세의무자가 P에 주소를 둔 'Q'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③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J의 조부인 망 H의 본적지는 P이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 1)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최초로 기재된 'Q'의 주소가 'P'로, 원고들의 선대인 망 H의 본적지와 같고, 한자이름 또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Q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임은 인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임야조사부의 기재에 따르면 AC 임야 12정 2단 8무보는 지적 계출이 없어 국유로 귀속된 토지로 보이는 점, ② 구 임야대장은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구 임야대장에 망 Q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망 Q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임이 추정되지 않는 점, ③ 임야세명기장에 'AG에 주소를 둔 AH'이 'M 임야'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P에 주소를 둔 Q'이 'AL 임야, AI, AJ, AK 각 임야'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망 J의 조부인 망 H이 AC 임야의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AL 임야, AI, AJ, AK 각 임야가 분할 전 토지와 동일한 토지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분할 전 토지가 망 J의 조부인 망 H의 소유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망 H의 소유이던 분할 전 토지를 순차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최종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훈

판사김태진

판사윤혜원

별지

- 1) 단기 4277년에 해당한다.
- 2) 정확한 사망일자는 제출된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96. 6. 28. 이후 사망하였다.
- 3) 1정보는 3,000평, 1단보는 300평, 1무보는 30평이다. 3정 6단보는 10,800평으로 이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35,702\text{m}^2 (=10,800\text{평} \times 3.3058\text{m}^2)$ 이다.
- 4) '사고(事故)'란에 기재가 있으나 기재 내용이 잘 식별되지 아니한다(갑 제5호증 제3쪽 참조).